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일부개정('24.7.1일 시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관세법 제71조 제1항 일부개정에 따라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계란가공품, 조주정, 냉동딸기 등 2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오렌지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II. 적용 품목 안내

1. 예시품목

바나나 등 과일류, 가격이 하락한 원자재, 식품 원료 등에 적용한다.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	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	1,600톤
0402	29	기타		0	

* 기타 품목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4차 할당관세(7.1일 시행)

[붙임2] [별표 3]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Contact



소유희 관세사 / Director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김기림 / Asso

T 02-6011-3025

E grkim@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